

##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00· 6· 14 조례 제 335호  
개정 2003· 7· 30 조례 제 460호  
개정 2006· 1· 3 조례 제 591호  
개정 2008· 3· 3 조례 제 703호  
일부개정 2019· 3· 8 조례 제1472호  
전부개정 2022· 3· 7 조례 제180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감사청구 주민 수)**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.

부칙 <2022· 3· 7 조례 제1802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